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신일항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A Study on An Improvement of the Ability of Preparing the Financial Statements

Yun-Sung Koh^a, Il-Hang Shin^b

^aCollege of Business,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South Korea

^b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Gachon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28 February 2020, Revised 18 March 2020, Accepted 25 March 2020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effective system improvement and operation methods for the improvements on the ability of firms'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of not only the accounting staff but also accounting specialist such as CPA or CTA.

Findings - For the improvements on the ability of firms'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comprehensive improvement in accounting education is needed as follows. First, the focus of accounting education should be converted to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case study and analysis of accounting standards. Seco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Korea Accounting Institute in cooperation with accountancy firm need to create an accounting education program. Third, the focus of accounting education should be converted to consumer oriented education by providing accounting knowledge with various methods of teaching. Fourth, this study suggests the creation of the committee on Accounting Education.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As a result of the incorrect practice of firms'relying on auditors to prepare the financial statements, social concerns about the reli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are raised because the incorrect practice decreases the auditor's independence and weaken the auditor's ability to verify accounting inform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us of auditors'preparation of the financial statements

Keywords: IFRS,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bility of Preparing the Financial Statements, Preperation for Financial Statement on behalf of the company, Advice for accounting

JEL Classifications: M40

^a First Author, E-mail: max0907@hufs.ac.kr

^b Corresponding Author, E-mail: jayshih00@gachon.ac.kr

본 논문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지원에 의해 수행된 'IFRS 시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의 연구보고서 제 43호의 내용의 일부를 수정 및 발전시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저자 고윤성은 2020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으며, 저자 신일항은 2020년도 가천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 2020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작성하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금융감독원의 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작성의 일부를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설문대상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 담당자, 재무제표를 감사 하는 공인회계사 그리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기업은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일부를 감사인에게 의존한다는 응답이 4.83/5.0에 달하였다. 이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감사인이 작성해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인지 잘 나타내 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관행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인들과 규제기관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무제표의 일부라도 감사인이 대신 작성해주는 관행에서 벗어 나지 않으면 제공하는 감사서비스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이 피감사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외감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은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 시 일부 기업의 감사인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사인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사인의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을 사전적으로 방지하여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¹⁾.

1) 2017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그러나, 이와 같이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감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 실태를 확인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즉 아직까지 감사인을 통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감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 실태를 확인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무제표 대리작성 근절을 위한 외감법 개정이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외감법 개정 이후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실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애로요인을 탐색하여 재무제표 작성자들 입장의 K-IFRS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II장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대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역량 상의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고, V장에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 능력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VI장에서는 논문의 내용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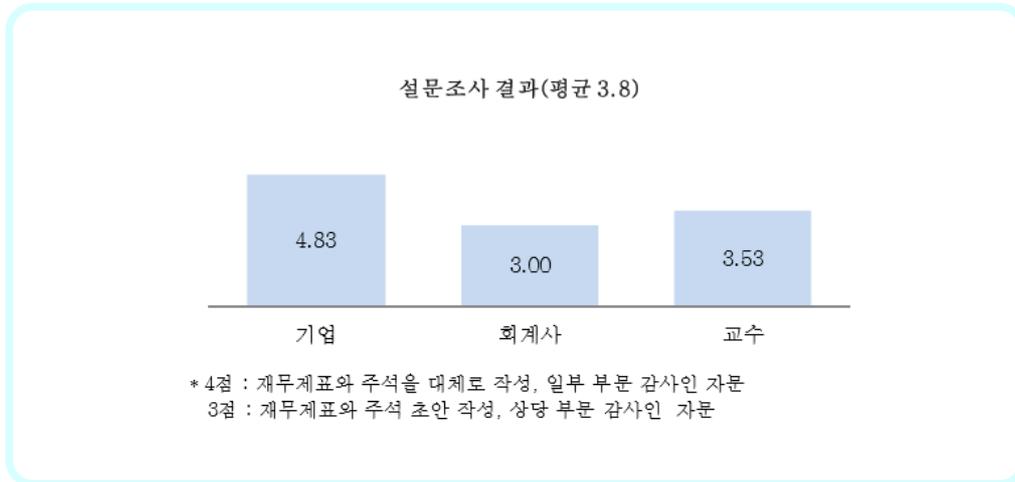
II.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역량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 방법론

1. 연구의 필요성

회계정보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3 요소인 회계정보 생산자(기업), 감시자(감사인, 감독기구), 회계정보이용자(투자자, 금융기관, 재무

를”(외부감사법)¹⁾에서는 적절한 감사시간을 투입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표준감사시간 규정을 만든 것도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김남현과 이용규, 2019)

Fig. 1. 재무제표 대리작성 관련 설문 결과 (금융감독원의 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발표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2016), KOTRA(2018) 글로벌 화장품 산업백서 p.26, 저자 재구성.

분석가 등)가 서로 유기적으로 생산-검증 및 감독-이용의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요소는 1차적으로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기업이 전문성을 가지고 충실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회계정보생산자인 기업 스스로 재무제표를 적절하게 작성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직접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부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저하시키고 그로 인한 감사인의 회계정보검증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¹⁾.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관행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일부라도 감사인에 의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회계법인이 피감사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을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회사의 대표이사 와 회계담당 이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감사인 및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인이 피감사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외감법 제 7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외감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향상을 통한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에 대한 금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 시 일부 기업의 감사인에 대한 의존도를 없애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사인이 자신 이 한 일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사인의 자기검토위협(self-review threat)을

1) 기업을 소유하는 가족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가족 기업은 주주와 경영자 간의 대리인 문제 대비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대리인 문제가 부각되는 기업인데, 한국기업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유혜영과 채수준, 2019). 따라서 국내 기업은 회계정보의 신뢰성 관련되어 사회적 우려가 크다.

Table 1. 외감법 제7조 개정 내용 신규 조문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p>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회사는 그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p> <p>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p> <p>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31230]</p>

사전적으로 방지하여 감사인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이 증선위(실제로는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규제당국이 모니터링 함으로써 재무제표 작성 책임의 주체는 기업이라는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준화, 2015).

그러나 이와 같은 외감법의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기대효과와는 달리 외감법 개정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의 획기적 향상 및 감사인의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인의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범위의 모호성과 감사인을 통한 회계자문의 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및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인을 통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기업의 회계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외감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그 실태를 확인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재무제표 대리작성 근절을 위한 외감법이 개정된지 수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그간의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실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원인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제도개선 및 운영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향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강하게 요구됨에 따라 본 연

Table 2. 연구방법론 개요

구분	내용
설문조사 기간	2017.1.15.~2017.1.26
설문조사 대상	- 기업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협회, 비상장외감, 비상장기타 소속 법인 - 전문가용: 회계사, 세무사
설문조사 방식	- 기업용 설문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의 협조를 받았음 - 전문가용 설문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았음 - 설문조사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설문회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효성 있는 설문응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직접 강의를 하였던 여러 대학의 회계 및 세무수업을 수강하였던 기업체 재직 학생들 및 재직 기업의 회계담당자에게 직접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음
설문조사 회수	- 기업용: 122개 설문응답 회수 - 전문가용: 103개 설문응답 회수복작성

구 주제의 중요성 및 시의적절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개요는 Table2와 같이 정리하였다.

2. 연구 방법론 개요

본 연구는 기업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현황을 파악하여 재무제표 작성역량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현황 및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설문조사의 성격상 기업의 응답자가 설문 응답이 소극적이거나, 현실을 다소 축소하여 응답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회계전문가(회계사, 세무사)를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 및 문제점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존재함에 따라 기업의 회계담당자 외에 외부 회계전문가(회계사, 세무사)를 대상으로도 동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상세한 설문조사 방법론

III. 기업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개요

먼저 본 연구의 핵심 사항인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에 대한 정의를 수행하였다.

- 대리작성: 기말에 재무제표(개별, 연결, 주석)를 작성하는 시점에 회사를 대리하여 재무제표의 수치 및 주석사항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로써, 특정 항목의 일부 수치를 직접 수정하는 경우도 포함함(단, 세무관련 업무는 제외함)
- 회계자문: 기말 재무제표(개별, 연결, 주석) 작성 이전시점 혹은 기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일상적인 회계업무(회계 기준의 적용 및 회계처리결정

Table 3.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현황 분석 설문 개요

구분	기업 대상 설문	전문가 대상 설문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 및 비감사인을 통한 대리작성 - 감사인 및 비감사인을 통한 회계자문에 대한 설문 - 개정 외감법 시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 및 비감사인을 통한 대리작성 - 감사인 및 비감사인을 통한 회계자문에 대한 설문 - 개정 외감법 시행효과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업무 담당 인력 특성 - 회계기반 투자 현황 - 외부 회계 전문가 활용 현황 	해당 없음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원인 및 문제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준의 복잡성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시간 부족 - 회계전문성 부족 - 경영자의 재무제표작성 의지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기준의 복잡성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시간 부족 - 회계전문성 부족 - 경영자의 재무제표작성 의지 부족

등)에 대한 자문을 의미함 (단, 세무, M&A, 국제회계기준이나 연결재무제표 시스템 도입과 같은 비경상적인 회계 관련 프로젝트는 제외함)

이와 같은 용어 정의를 기반으로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현황 분석을 위해 <표 2>와 같이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각각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여부 및 분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강화하고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기업 입장에서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 기업 입장에서 재무제표 작성 역량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파악함으로써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현황 분석을 위해 회계업무 담당 인력 특성, 회계기반 투자 현황, 외부 회계 전문가 활용 현황에 대한 설문을 수행하였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현황 분석을 위한 설문은 Table3과 같이 그 개요를 정리할 수 있다.

2.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현황

1) 감사인 대리작성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감사인을 통한 재무제표 대리작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22%에 해당하며, 이는 설문 응답 모집단의 22%에 해당하는 기업이 자체 회계인력이 아닌 감사인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응답 기업과 해당 기업의 감사인을 직접 대응하여 조사하지는 못하였으나,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시 78%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가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리작성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과의 시각 차이와 대리작성에 대한 기업의 소극적 인정 등이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감사인을 통한 대리작성 분야에 대해, 기업은 개별재무제표 19%, 연결재무제표 32%, 주식 49%의 비율로 응답하였다. 이는 대리작성이 주로 기업의 주식 및 연결재무제표 관련 회계기준의 복잡성 및 작성 능력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비감사인 대리작성

비감사인을 통한 대리작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에 해당하며, 이는 설문 응답 모

집단의 6%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자체 회계인력이 아닌 비감사인을 통해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감사인을 통한 대리작성 비율 22%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결과로 비감사인을 통한 대리작성은 거의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전문가 대상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감사인으로서 대리작성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 전문가의 21%에 해당하며, 이는 설문응답 전문가의 21%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피감사회사가 아닌 기업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경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인 비감사인으로서 부터의 대리작성 응답인 6% 것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나, 여전히 감사인 대리작성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결과를 알 수 있다.

3) 감사인 회계자문

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자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5%에 해당하며, 이는 설문 응답 모집단의 45%에 해당하는 기업이 감사인을 통해 회계자문을 받았다는 것으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감사인을 통한 회계자문을 받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감사인으로서 회계자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 전문가의 21%에 해당하며, 이는 설문응답 전문가의 21%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피감사회사에 대해 회계자문 경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감사인의 대리작성이 있었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78%였던 것과는 달리 감사인의 회계자문 경험에 대해서는 매우 낮게 응답을 한 결과인데, 이는 대리작성과 회계자문의 불명확한 개념 차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가는 대부분 단지 회계자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회계자문을 포함한 대리작성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비감사인 회계자문

비감사인을 통한 회계자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기업의 19%에 해당하며, 이는 설문 응답 모집단의 19%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비감사인을 통해 회계자문을 받았다는 것으로 비감사인을 통한 회계자문 역시 감사인을 통한 회계자문 응답 45% 보다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비감사인을 통한 회계자문의 경우 기업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자문비용 발생 및 감사인의 의견과 차이가 존재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비감사인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 관련 회계자문은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에 비감사인으로서 회계자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문가가 전체 전문가의 38%에 해당하며, 이는 설문응답 전문가의 21%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감사인으로써 피감사회사에 대해 회계자문 경험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에 비해 높았다. 이는 감사인 회계자문이 감사인 독립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아는 감사인이 실제와 다르게 대답했을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5) 외감법 시행 효과

개정된 외감법 시행(2014.7.1) 이후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에 대해 40% 이상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전체 기업의 56%로 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감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관행을 근절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는 40% 이상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전체 전문가의 54%로 기업의 응답율(56%)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외감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관행을 근절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3.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현황

1) 회계업무 담당 인력 특성

기업 내 회계업무 담당 인력 수에 대한 설문 결과, 응답자 소속 법인의 79%가 5명 이하의 회계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업무

담당 인력 중 CFO 경력에 대한 설문 결과, 11년 이상이 응답자 소속 법인의 67%에 해당하였다. 회계업무 담당 인력 중 회계팀장 경력에 대한 설문 결과, 11년 이상이 응답자 소속 법인의 70%에 해당하였다. 회계팀 팀원 경력은 전체 기업에서 1년 이하 4%, 1~3년 이하 14%, 4~5년 이하 36%, 6~10년 이하 39%, 11년 이상 7%에 해당하였다. 즉 대부분의 기업에서 회계팀 팀원의 경력이 4년 이상 10년 이하에 해당하였다.

반면에 회계 관련(경영학, 회계학, 세무학) 전공자는 전체 기업에서 1명 10%, 2~3명 52%, 4~5명 26%, 6~10명 9%, 11명 이상 3%에 해당하므로, 전체 기업의 약 과반수에 해당하는 52%의 기업에서만 회계 관련 전공자가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회계업무 담당 인력의 인적특성으로 회계전문자격증(공인회계사, 세무사, AICPA) 소지자는 전체 기업에서 없음 77%, 1개 12%, 2개 5%, 3개 3%, 4개 이상 3%에 해당하므로, 전체 기업의 77%에서 회계업무 담당 인력 중 회계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회계담당 인력의 보강, 관련 전공자 및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일정 비율 확보를 통한 기업의 회계전문성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회계기반 투자현황

연평균 회계 관련 교육시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83%가 일 년에 50시간미만의 회계 교육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회계업무의 속성 및 급변하는 추세를 반영할 때 내부 및 외부 회계 교육시간이 연 평균 50시간(월 평균 약 4시간)뿐임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회계 교육을 통한 기업의 회계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회계기반 투자 현황으로 전산시스템은 전체 기업의 93%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전체 기업의 93%가 회계 정보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외부 회계 전문가 활용 현황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회계감사서비스 1년 평균 보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무응답 7%, 5천만 미만 4%, 5천~1억 미만 3%, 1억~2억 미만 6%, 1억~2억 미만 6%, 2억~3억 미만 6%, 3억 이상 74%에 해당하므로, 이는 전체 기업의 74%가 연평균 3억 이상의 감사보수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비회계감사서비스 1년 평균 보수는 해당사항없음 64%, 5천만 미만 9%, 5천~1억 미만 9%, 1억~2억 미만 7%, 1억~2억 미만 8%, 2억~3억 미만 2%, 3억 이상 10%에 해당하므로, 이는 전체 기업의 64%가 비회계감사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보수를 지출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4.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원인 및 문제점 분석

1) 회계기준의 복잡성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회계기준의 복잡성이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원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다 6%, 보통이다 26%, 그렇다 38%, 매우 그렇다 16%에 해당하므로, 50%를 상회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회계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대상 설문에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7%,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16%, 그렇다 49%, 매우 그렇다 24%로 전체 응답자의 73%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회계기준의 복잡성을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¹⁾.

1) 기업가치 또는 자산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자본비용(요구수익률)을 추정하게 된다. 이 때 실무적으로는 CAPM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베타는 자본비용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치평가를 위한 자본비용의 베타 추정에는 조정베타가 주로 사용된다. 실무에서 자산의 손상차손 가치평가지 공정 가치를 추정할 때 조정베타는 자주 사용된다(장욱과 김이배, 2019). 이와 같이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려면

2)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시간 부족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시간 부족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그렇지 않다 24%, 그렇지 않다 9%, 보통이다 26%, 그렇다 28%, 매우 그렇다 13%로 4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시간이 촉박함으로 인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시간 부족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 7%, 그렇지 않다 13%, 보통이다 24%, 그렇다 35%, 매우 그렇다 21%로 전체 응답자의 50%를 상회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기한이 너무 촉박한 현실을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원인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회계전문성 부족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회계전문성 부족이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원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그렇지 않다 17%, 그렇지 않다 17%, 보통이다 35%, 그렇다 27%, 매우 그렇다 4%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회계전문성 부족을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원인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기업의 회계기준전문성 부족을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원인으로 응답한 결과와 상반된다. 회계전문성 부족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않다 1%, 보통이다 10%, 그렇다 44%, 매우 그렇다 42%로 전체 응답자의 86%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회계기준전문성 부족을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 경영자의 재무제표작성 의지 부족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경영자의 재무제표작성 의지 부족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그렇지 않다 45%, 그렇지 않다

25%, 보통이다 18%, 그렇다 9%, 매우 그렇다 3%에 해당한다. 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자의 재무제표작성 의지 부족을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원인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재무제표작성 의지 부족을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원인으로 응답한 결과와 상반된다. 경영자의 재무제표작성 의지 부족이 원인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9%, 보통이다 19%, 그렇다 31%, 매우 그렇다 39%로 전체 응답자의 7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경영자의 재무제표작성 의지 부족을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IV.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 능력 개선방안

1. 개요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현황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표 3>와 같이 기업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각각 재무제표 작성능력 개선방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강화하고 제고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작성능력 개선을 위한 설문은 Table4와 같이 그 개요를 정리할 수 있다.

이 때 회계기준의 단순화 또는 회계기준해설서 제공이 개선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은 회계기준이 재무제표 작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회계기준원이나 금융 감독 당국을 대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2. 재무제표 작성 능력 개선방안

복잡한 회계기준과 관련된 재무기법을 이해해야 한다.

Table 4. 재무제표 작성능력 개선방안 설문 개요

구분	기업 대상 설문	전문가 대상 설문
재무제표 작성 능력 개선 방안	- 회계기준의 단순화	- 회계기준의 단순화
	- 회계기준 해설서 제공	- 회계기준 해설서 제공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시간 연장	-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시간 연장
	- 회계교육 증대	- 회계교육 증대
	- 회계전문가 채용	- 회계전문가 채용
자유 의견	-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의지	-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의지
	-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의 질의응답 활성화	-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의 질의응답 활성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해 설문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함		

1) 회계기준의 단순화

회계기준의 단순화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29%, 필요하다 42%, 매우 필요하다 23%로 전체 응답자의 65%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근절을 위해 회계기준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회계기준의 단순화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계기준의 단순화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9%, 필요하지 않다 21%, 보통이다 29%, 필요하다 26%, 매우 필요하다 15%로 전체 응답자의 41%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근절을 위해 회계기준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 회계기준 해설서 제공

회계기준 해설서 제공이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필요하지 않다 4%, 보통이다 25%, 필요하다 45%, 매우 필요하다 25%로 전체 응답자의 7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근절을 위해 회계기준 해설서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회계기준 해설서 제공이 대

리작성 및 회계자문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회계기준 해설서 제공이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6%, 필요하지 않다 13%, 보통이다 27%, 필요하다 35%, 매우 필요하다 19%로 전체 응답자의 50%를 상회하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근절을 위해 회계기준 해설서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3) 회계교육 증대

회계교육 증대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필요하지 않다 0%, 보통이다 29%, 필요하다 49%, 매우 필요하다 21%로 전체 응답자의 7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근절을 위해 회계교육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회계교육 증대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필요하지 않다 4%, 보통이다 22%, 필요하다 40%, 매우 필요하다 34%로 전체 응답자의 74%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회계교육 증대가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회계전문가 채용

회계전문가 채용이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11%, 보통이다 50%, 필요하다 28%, 매우 필요하다 9%로 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회계전문가 채용을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 방안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회계전문가 채용이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크게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와 상반된다. 회계전문가 채용이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필요하지 않다 4%, 보통이다 13%, 필요하다 36%, 매우 필요하다 47%로 전체 응답자의 83%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근절을 위해 회계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의지

경영자의 재무제표작성 의지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 필요하지 않다 6%, 보통이다 45%, 필요하다 25%, 매우 필요하다 12%로 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의지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 방안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재무제표 작성의지가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전문가와 상반되고 있음을 보인다.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의지가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0%, 필요하지 않다 1%, 보통이다 13%, 필요하다 20%, 매우 필요하다 66%로 전체 응답자의 86%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근절을 위해 경영자의 재무제표작성 의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6)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의 질의응답 활성화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의 질의응답 활성화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필요하지 않다 3%, 보통이다 31%, 필요하다 36%,

매우 필요하다 28%로 전체 응답자의 65%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근절을 위해 질의응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의 질의응답 활성화가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의 개선방안이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필요하지 않다 6%, 보통이다 23%, 필요하다 31%, 매우 필요하다 39%로 전체 응답자의 70%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이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근절을 위해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의 질의응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3. 기타 자유의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해 설문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의견은 크게 회계기반과 관련된 부분, 회계기준과 관련된 부분, 기타 법규 및 제도와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회계기반과 관련된 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해 회계정보 산출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에 투자해야 함을 주장한 의견을 의미한다.

회계기반과 관련된 부분은 예컨대, 회계 교육 증대, 회계전문가 채용, 경영자의 재무제표 작성 의지와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회계기준과 관련된 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해 회계기준의 보완 및 정비 필요함을 주장한 의견을 의미한다. 회계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예컨대, 회계기준의 간소화 혹은 회계 기준 관련 다양한 해설서의 제공 등과 관련된 내용을 의미한다.

법규 및 제도와 관련된 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강화를 위해 회계 관련 제반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 의견을 의미한다.

법규 및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예컨대,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시간 연장이나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의 질의응답 개선 등 회계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 관련 내용을 의미한다.

Table 5. 기업 측 자유의견 요약

구분	내용
회계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가 재무제표 작성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한 교육, 인력 등의 지원 - 회계파트는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라인업 - 회계담당 인력 부족. 전문성도 부족. - 규제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인력총원이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의 보완 필요
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GAAP과 비교하였을 때 K-IFRS는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음 - 좀 더 간단명료한 기준서
법규 및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텍스 온라인 상담처럼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질의응답부분을 활성화

1) 기업 측 자유의견

기업 설문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의견 중 응답하지 않은 건을 제외하면, 회계기반과 관련된 의견이 전체의 45%, 회계기준과 관련된 의견이 전체의 29%, 기타 법규 및 제도와 관련된 의견이 전체의 26%로 나타난다.

기업 측 자유의견으로 제시된 내용 중 빈도가 높거나 주목할 만한 의견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 전문가 측 자유의견

전문가 설문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기술한 의견 중 응답하지 않은 건을 제외하면, 회계기반과 관련된 의견이 전체의 57%, 회계기준과 관련된 의견이 전체의 9% 기타 법규 및 제도와 관련된 의견이 전체의 34%로 나타났다.

V. 외감법 적용 대상별 재무제표 작성 현황 및 개선방안

1. 개요

기업특성별 재무제표 작성 현황 및 개선방안을 검토함으로써 기업특성별 특화된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규모나 감사인규모와 같은 기업특성별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기업규모나 감사인 규모별로는 유의미한 특성별 차이를 보여주는 설문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다만 본 논문이 2013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감사인이 피감사 기업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외감법 제 7조 개정 내용의 효과를 보는 것이므로, 외감법

Table 6. 전문가 측 자유의견 요약

구분	내용
회계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구되는 사항과 실무담당자의 역량의 괴리가 너무 큰 것이 문제 - 경영자의 작성 의지 또한 적다는 것이 큰 문제
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일반 회계담당자가 회계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회계기준 변경, 개정에 대한 안내가 부족
법규 및 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수입제에서는 계약연장에 대한 우려로 눈치 보면서 회사가 요청하는 데로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

적용 대상 기업군 별로 재무제표 작성 현황 및 개선방안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이 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의미있게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2. 외감법 적용 대상별 재무제표 작성 현황

1) 감사인 대리작성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외감법대상 기업은 20.2%, 비대상 기업은 35.3% 기업이 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을 통한 대리작성 분야에 대해, 외감법대상 및 비대상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주식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2) 비감사인 대리작성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외감법대상 기업은 6.7%, 비대상 기업은 0% 기업이 비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감사인을 통한 대리작성 분야에 대해, 외감법대상 및 비대상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주식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에 의한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3) 감사인 회계자문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외감법대상 기업은 41.3%, 비대상 기업은 64.7% 기업이 감사인에 의한 회계자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을 통한 회계자문 분야에 대해, 외감법대상 및 비대상 기업 공통적으로 주식에 대한 감사인에 의한 회계자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4) 비감사인 회계자문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외감법대상 18.3%, 비대상 23.5% 기업이 비감사인에 의한 회계자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을 통한 회계자문 분야에 대해, 외감법대상 기업은 연결재무제표와 주식에 대한 회계자문이 다수를 차지하

고 비대상 기업은 개별재무제표와 주식에 대한 비감사인에 의한 회계자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3.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원인 및 문제점 분석

외감법대상 기업은 비대상 기업 대비하여 회계기준의 복잡성 및 재무제표 작성 기한 문제로 인하여 대리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회계기준의 복잡성으로 인해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한다는 응답은 외감법대상 기준에 따라 대상 59.86점, 비대상 52.9점을 나타냈다.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시간 부족으로 인해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한다는 응답은 외감법대상 기준에 따라 대상 49.28점, 비대상 50.0점을 나타냈다. 회계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한다는 응답은 외감법대상 기준에 따라 대상 44.95점, 비대상 50.0점을 나타냈다. 경영자의 재무제표작성 의지 부족으로 인해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한다는 응답은 외감법대상 기준에 따라 대상 24.52점, 비대상 30.0점을 나타냈다.

4. 외감법 적용 대상별 재무제표 대리작성 감소 현황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금지하는 외감법 개정으로 외감법 적용 대상인 기업이 비대상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재무제표 대리작성 감소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감법적용 대상 기업은 재무제표 대리작성 감소 효과에 대해 70%초과 감소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비대상 기업은 20~30%이하 감소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는 외감법 개정의 효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을 제시한다.

5. 외감법 적용 대상별 재무제표 작성 능력 개선방안

외감법대상 기업은 비대상 기업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7개의 개선방안에 대해 근소한 차이로

높게 응답을 하였다. 특히 회계기준 단순화 및 회계기준 해설서 제공, 재무제표 작성 시간 연장과 같은 회계 기준 차원의 개선방안을 재무제표 작성 능력 개선 방안으로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7개로 제시한 재무제표 작성 능력 개선방안의 외감법 적용 대상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외감법 적용 대상별로 대상 72.12점, 비대상 51.47점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 해설서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외감법 적용 대상별로 대상 74.04점, 비대상 61.76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외감법 적용 대상별로 대상 74.28점, 비대상 61.76점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회계교육 증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외감법 적용 대상별로 대상 72.12점, 비대상 69.12점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계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외감법 적용 대상별로 대상 57.69점, 비대상 57.3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재무제표작성 의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외감법 적용 대상별로 대상 55.29점, 비대상 54.41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의 질의응답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연결재무제표 작성별로 대상 71.88점, 미작성 67.65점으로 나타났다.

VI. 결론

본 연구는 회계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두어 살펴볼 때 회계정보 생산자인 기업의 회계정보생산 능력을 증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진행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업 내부 요소인 기업의 회계전문성 측면과 경영자의 인식 측면을 살펴보고, 외부 요소로 회계기준 및 회계교육 측면을 검토하였다.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 작성 능력 제고를 위해 교육과 회계기준 및 법규 및 제도적 차원의 보완을 강조하였다. 즉, 기업은 회계 교육을 통한 지식 향상과 더불어 회계기준의 간소화 및 유관기관의 회계 관련 이슈 해결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전문가 집단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제고를 위해 상대적으로 법규 및 제도적 차원의 보완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전문가 집단은 재무제표 작성 기한의 연장 및 회계감사 환경의 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자유수입제 하에서 기업의 대리작성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 기능 강화나 재무제표 주석 부분과 같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 그리고 회계감사 환경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볼 때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자의 회계투명성 및 재무제표 작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경영자의 회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회계담당 부서의 전문성 있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회계전문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회계기준서의 난해함을 보완할 수 있는 교육 강화 뿐만 아니라 회계기준서의 정확하고 사례중심 해설 제공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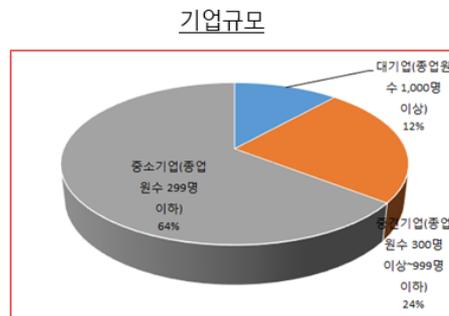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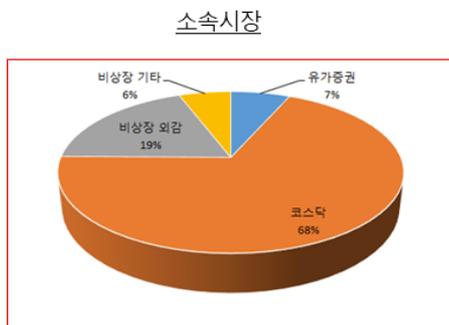
References

김남현, 이용규 (2019),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숙련도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아태비즈니스연구*, 10(4), 31-47.
 노준화 (2015), “감사보수 및 재무제표 대리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회계저널*, 24(3), 297-326.
 유혜영, 채수준 (2019), “가족기업과 추가급락위험”, *아태비즈니스연구*, 10(4), 77-86.
 장욱, 김이배 (2019), “조정베타 추정방식이 자산 손상차손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아태비즈니스연구*, 10(4), 6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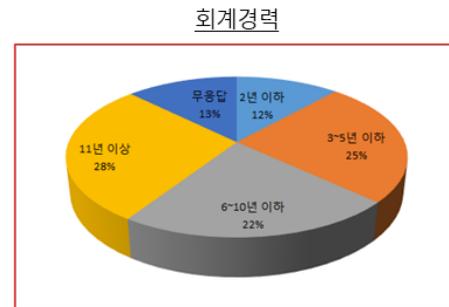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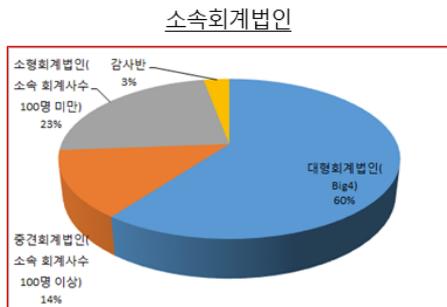
Appendix

1. 설문응답자 분포

(1)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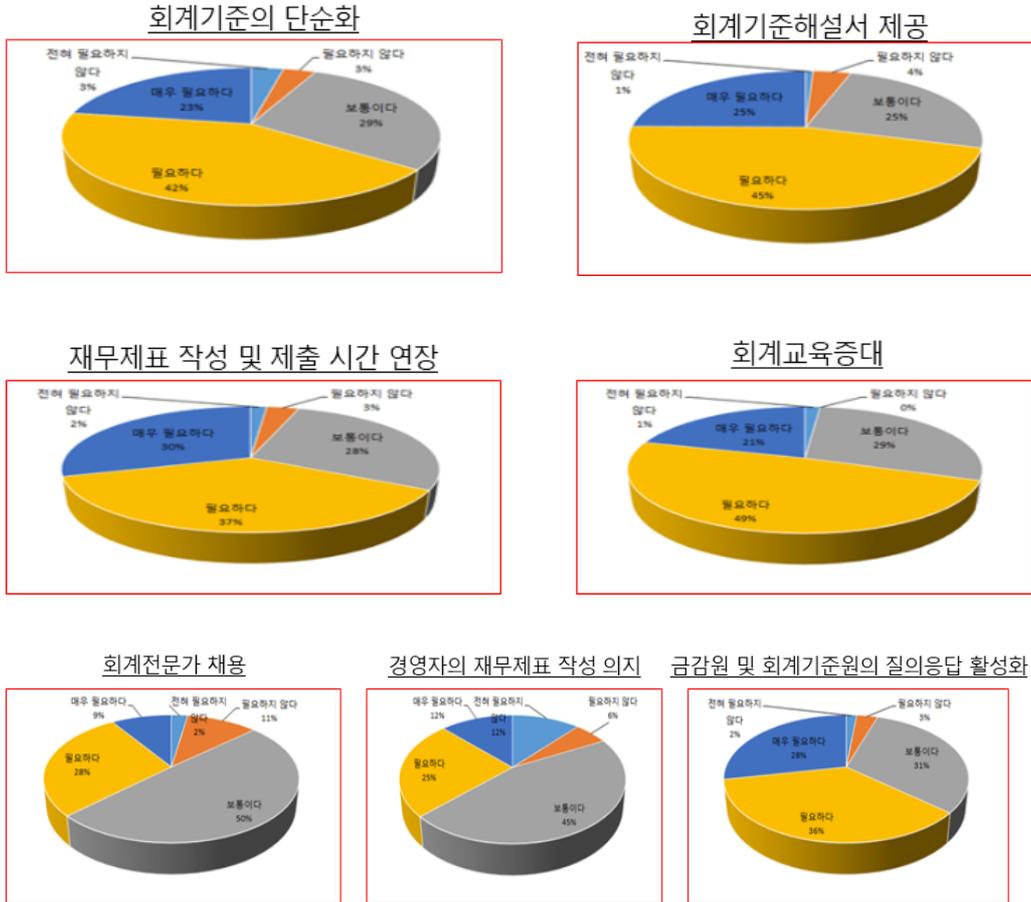


(2)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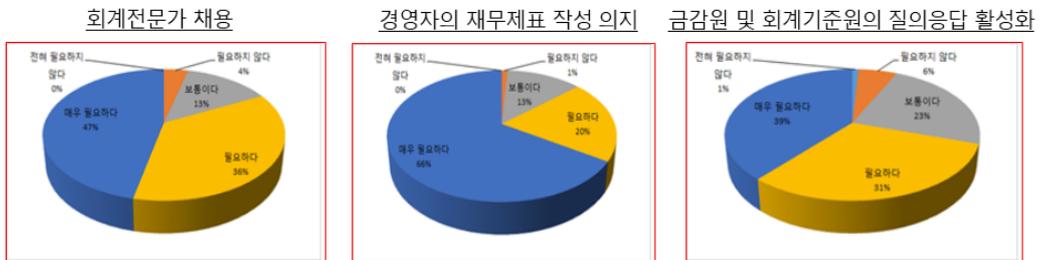


2. 연구결과

(1)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개선방안(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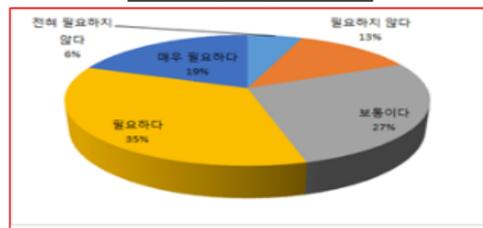
(2) 재무제표 대리작성 및 회계자문 개선방안(전문가)



회계기준의 단순화



회계기준해설서 제공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시간 연장



회계교육증대

